

[별표 1의2] <개정 2014.1.2>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제13조제4항관련)

조종장치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	조명기준
등화점등장치	점등 또는 Light		설치가능
전조등·후미등	제작자가 정함	제작자가 정함	설치가능
경음기	경음기 또는 Horn		설치가능
방향지시기	표시가능		설치가능
비상경고신호등	비상 또는 Hazard		설치필요
앞면창유리창닦이기	창닦이기, Wiper 또는 Wipe		설치필요
앞면창유리세정액 분사장치	세정액, Washer 또는 Wash		설치필요
앞면창유리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	창닦이기-세정액, Wash-wipe 또는 Washer-wiper		설치필요
냉·난방용 팬	팬 또는 Fan		설치필요
앞면창유리서리제거장치	서리제거, Defrost, Defog 또는 Def		설치필요
뒷면창유리서리제거장치	뒷면서리제거, Rear Def, Rear Defrost, Rear Defog 또는 R-Def		설치필요
차폭등	차폭등, Marker Lamps 또는 Mk Lps		설치필요
수동초우크	초우크 또는 Choke	표시가능	설치가능
원동기 시동	시동 또는 Engine Start	표시가능	설치가능
원동기 정지	정지 또는 Engine Stop	표시가능	설치필요
손조작 스로틀	스로틀 또는 Throttle	표시가능	설치가능
정속주행장치	제작자가 정함	표시가능	설치필요
냉·난방장치	제작자가 정함	표시가능	설치필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정지	ESC OFF		설치필요
--------------------	---------	--	------

주 : 1.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목의 조종장치를 제외한 기타의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오프위치에서 운전자가 식별표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가. 회전식 등화점등장치 및 회전식 전조등·후미등의 조종장치

나. 오프위치가 없는 회전식 조종장치

다. 경음기의 조종장치

2. 제작자등은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3. 정속주행장치 및 냉·난방장치의 조종장치에는 기능을 조종하는 각 조종위치마다 식별표시를 하여야 하고, 1개의 기능에 관하여 등급이나 정도를 조절하는 조종장치에는 양 끝의 조절위치에 그 등급이나 정도표시를 하여야 하며, 온도를 조절하는 조종장치의 양 끝의 조절위치의 표시를 색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온도의 조절위치는 청색으로, 가장 높은 온도의 조절위치는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조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계기판넬의 윗부분, 조향기둥, 차실바닥 및 바닥에 있는 콘솔부분에 설치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원동기시동 및 원동기정지를 위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당해 조종장치들이 열쇠잠금장치와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6. 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냉·난방용팬과 냉·난방장치에는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등화점등장치에 의하여 조종되는 조종장치는 별도의 식별표시나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